

# 2011년 3월 31일 이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물은?



“

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(2011년 3월 31일 이내)에 「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」에 가입하여야 하며,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## \*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?

화재로 인한 건물손해와 타인의 신체상 손해(부상, 후유장애, 사망)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
### [새로 지정된 특수건물]

업 종	면적기준
공유건물(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) 전자오락실, PC방, 노래연습장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단란주점, 유흥주점 목욕장 영화상영관 지하철역사 옥내사격장	연면적 1,000㎡ 이상 하나의 건물에 포함된 각 영업장면적 합계 2,000㎡ 이상 영업장면적 2,000㎡ 이상 영업장면적 2,000㎡ 이상 연면적 3,000㎡ 이상 없음.